

특허협력조약

발신: 국제조사기관

PCT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PCT규칙 43의2.1)

수신:
특허법인 대한

대한민국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0길 18 부봉빌딩 2층

발송일 (일/월/년) 2017년 03월 20일 (20.03.2017)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PCT-2017-001

추가적인 조치
아래 2를 참조

국제출원번호
PCT/KR2017/000325

국제출원일 (일/월/년)
2017년 01월 10일 (10.01.2017)

우선일 (일/월/년)
2016년 03월 28일 (28.03.2016)

국제특허분류(IPC)
B66B 29/00(2006.01)i, B66B 23/02(2006.01)i, B66B 23/12(2006.01)i

출원인
(주)에이치피엔알티 등

1. 본 견해서는 다음 기재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1기재란 견해서의 기초
- 제2기재란 우선권
- 제3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부작성
- 제4기재란 발명의 단일성 결여
- 제5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 제6기재란 특이 인용문헌
- 제7기재란 국제출원의 흠결
-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2. 추가적인 조치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면, 본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의 견해서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만, 출원인이 본 기관 이외의 기관을 IPEA로 선택하고, 그 선택된 IPEA가 PCT규칙 66.1의2(b)에 따라 본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위와 같이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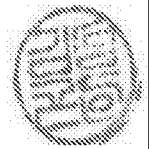
본 견해서가 상기와 같이 IPEA의 견해서로 간주되는 경우, 출원인은 서식 PCT/ISA/220의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의견서 및 보정서(해당하는 경우)를 IPE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사항에 대하여는 서식 PCT/ISA/220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ISA/KR의 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42-481-8578

본 견해서의 완료일
2017년 03월 20일 (20.03.2017)

심사관
김성곤
전화번호 +82-42-481-8746



제1기재란 본 견해서의 기초

1. 언어와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출원시의 언어로 된 국제출원
 - 국제조사를 위하여 _____ 로 번역되어 제출된 국제출원의 번역문 (PCT규칙 12.3(a) 및 23.1(b))
2. 본 견해서는 PCT규칙 91에 따라 당해 기관이 허가하였거나 당해 기관에 통보된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PCT규칙 43의2.1(a)).
3. 국제출원에 게시된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과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a. 아래의 형태로 출원시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열목록
 -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 b. PCT 규칙 13의3.1(a)에 따라 국제출원과 함께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 c.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국제출원일 이후에 아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규칙 13의3.1(a))
 -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규칙 13의3.1(b) 및 시행세칙 713)
4. 추가로 서열목록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버전이나 사본이 제출된 경우, 후속 버전 또는 추가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출원시 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와 동일하거나 또는 출원시의 게시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추가 의견:

제5기제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1. 견해

신규성 (N)	청구항	1-3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진보성 (IS)	청구항	없음	있음
	청구항	1-3	없음
산업상 이용가능성 (IA)	청구항	1-3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2. 인용문헌 및 설명:

참고한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 D1: KR 10-1503707 B1 ((주)미주하이텍) 2015.03.19
- D2: US 2012-0073933 A1 (ALOIS SENGER) 2012.03.29.

1. 신규성 및 진보성

독립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발명과 가장 근접한 인용문헌 D1에는 구동축에 고정되어 있는 휠이 외부 동력에 의해 회전함으로써 발판이 이동되는 에스컬레이터에 있어서, 구동축에는 래치휠(220)이 고정되어 같이 회전하다가 래치휠(220)의 역회전시 역주행 방지 장치가 작동하여 래치휠(220)의 역회전으로 멈추게 함으로써 구동축의 회전을 멈추어 역주행을 방지하게 되되, 역주행 방지 장치는 래치휠(220)에 인접하게 설치되는 역방향 차단기어(200)와, 역방향 차단기어(200)의 일면에 회동할 수 있게 설치되는 걸쇠(300), 걸쇠(300)의 일면에 설치되어 걸쇠(300)의 회전을 제어하는 솔레노이드(700),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힘을 전달하는 유압실린더(620)를 포함하여, 발판이 역주행하게되면 솔레노이드(700)가 걸쇠(300)를 회동시켜 래치휠(220)에 걸리도록 하여 래치휠(220)의 회동을 멈추게 하여 구동축의 휠의 회동이 정지됨으로써 발판의 역주행을 멈추게 하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장치 (D1의 단락 [0021]-[0028] 및 도면 2, 6 참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청구항 제1항은 스프링에 의해 탄성력이 부여된 상태로 설치되는 래치풀; 및 발판이 역주행하게 되면 솔레노이드가 제어봉을 후퇴시키는 기술적인 특징을 포함하는 점에서 인용문헌 D1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징은 인용문헌 D2의 스프링에 의해 움직이는 레버(24); 및 솔레노이드(26)가 전자기력에 의해 스트로크(34)를 움직이는 기술적인 특징 (D2의 단락 [0020]-[0023] 및 도면 3-4 참조)과 대응됩니다. 또한, 인용문헌 D2에는 인용문헌 D1과 동일한 기술 분야인 에스컬레이터 브레이크 시스템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문헌 D1, D2를 결합하는데 아무런 기술적 어려움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1항은 인용문헌 D1에다 인용문헌 D2에 제시된 상기 특징을 결합하는 것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므로, 진보성이 없습니다 (PCT 제33조(3)).

청구항 제2항에 부가된 특징은 인용문헌 D1의 스프로킷으로 구성되는 역방향 차단기어(200)가 스텝체인(100)과 연결되고, 유압실린더(620)는 조임부(500)에 연결되는 기술적인 특징 (D1의 단락 [0026]-[0028] 및 도면 4-6 참조)에 해당됩니다.

추가 기재란에 계속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청구범위, 발명의설명 및 도면의 명료성에 관하여 또는 청구범위가 발명의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래치폴(240)' 및 '래치폴(242)'은 병기된 도면부호에 의해 서로 동일한 구성인지가 불명확하고, 그것에 의해 상기 청구항은 발명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PCT 제6조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비고: 명세서를 참조하면, '래치폴(240)'은 '래치폴(242)'의 오기로 인정됩니다.)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5 기재란의 연속

청구항 제3항에 부가된 특징은 인용문헌 D1의 역주행을 멈추게 하는 힘을 전달하는 유압실린더(620)에 대한 기술적인 특징 (D1의 단락 [0026]-[0027] 및 도면 4-6 참조)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한 설계 변경을 통하여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2항 내지 제3항은 인용문헌 D1과 인용문헌 D2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므로, 진보성이 없습니다 (PCT 제33조(3)).

2. 산업상 이용가능성

청구항 제1항 내지 제3항은 산업상 이용 가능합니다 (PCT 제33조(4)).